#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61 발의연월일: 2022. 9. 22.

발 의 자: 조은희·김선교·김홍걸

박정하 • 배준영 • 서일준

서정숙・양향자・유상범

이명수 · 지성호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명령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는데 신상정보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음. 반면 신상정보 고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가구 및 보호시설·기관 등에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우편·모바일 방식으로따로 고지하는데 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바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기관인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부터제7항까지).

#### 법률 제 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5항 중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센터"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을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장에게"를 "장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에게"로 한다.

제5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 및"을 "장,"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을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장으로서"를 "장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제6항 및 제7항 중 "주민자치센터"를 각각 "주민센터"로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 상자가 거주하는 읍 • 면 • 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 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 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 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의 | 장, 읍 · 면사무소와 동 주민자 ----- 주민센터--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 제2조의2 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 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의 장, 「아동복지법」 제52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 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 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 터. ----설의 장에게 고지한다. - 장 및 「청소년복지 지원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 지시설의 장에게 ---.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sim$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sim$ 

#### ③ (생략)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 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 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 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 아교육법 | 에 따른 유치원의 | 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 • 면 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 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 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 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 • 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 | 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 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 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 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 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 와 동 주민센터의 장, 「학원 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2조 | 관한 법률 |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 의 장,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 터, 「청소<u>년활동 진흥법」 제</u> 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 시설의 장 및 「청소년복지 지 원법ㅣ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 할구역에 출생신고 · 입양신고 ·전입신고가 된 아동·청소년 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 관할구역에 설립 ·설치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장,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 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 복지법 .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 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으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 를 우편으로 송부받지 못한 자 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야 하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법으도 고시병령을 집행한다.
⑤
<u>장</u> ,
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 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u>장 및 「청</u>
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으로
서
<u>''I</u>
⑥

및 제5형	}에 따	른 우편	면송부 및	<u> </u>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성	<u>}</u> -
자가 실	제 거	주하는	읍 · 면시	ŀ
무소의 7	장 또는	: 동 <u>주</u>	민자치선	<u>]]</u>
<u>터</u> 의 장여	에게 위	임할 수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u>주</u> 민자치센터의 장은 우편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⑧・⑨ (생 략)

<u>주민센터</u>
⑦
<u>주</u>
민센터
⑧・⑨ (현행과 같음)